##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16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조명희·서일준·홍준표

배현진 · 한무경 · 김희국

이태규 · 박덕흠 · 김승수

이 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함)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"연구기관"이라 함) 간의 기능 조정업무 및 연구기관의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술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의 직원인 연구자들이 연구 및 기술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연구기관 간의 종합적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,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 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"및 경영협의회"를 "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기획평가위원회,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	제25조(기획평가위원회 <u>등</u> ) ①・
<u>협의회</u> ) ①·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
	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
	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
	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
	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
	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
	<u>를 둘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기획평가위원회, 경영협의회
	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
	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
	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